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334

발의연월일: 2025. 3. 25.

발 의 자: 박해철 · 송옥주 · 임미애

박지원 • 이정문 • 한민수

권향엽 · 정일영 · 손명수

맹성규・김 윤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무주택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등을 4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전근 등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보유 주택 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를

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52조제7항 신설 등).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제4항 본문 중 "이 항 및 제5항"을 "이 항, 제5항 및 제7항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"제1항·제4항 및 제5항"을 "제1항·제4항·제5항 및 제7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 중 "제1항·제4항·제5항"을 "제1항·제4항·제5항"을 "제1항·제4항·제5항"을 "제1항·제4항·제5항"을 "제1항·제4항·제5항"으로 한다.

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) 또는 그 배우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(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,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)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

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그 공제하는 금액이 연 2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2조제7항의
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2조(특별소득공제) ① ~ ③	제52조(특별소득공제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	4
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세대(이하 <u>이 항</u>	<u>০</u> ০ চু,
<u>및 제5항</u> 에서 "세대"라 한다)의	제5항 및 제7항
세대주(세대주가 이 항, 제5항	
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7조	
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	
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	
원을 말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)로서	
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	
이하의 주택(주거에 사용하는	
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	
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, 그	
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	
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	
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	
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)을	
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	

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 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다. 다만, 그 공제하는 금액 과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(이하 이 항 에서 "한도초과금액"이라 한다) 은 없는 것으로 한다.

⑤ · ⑥ (생 략) <신 설>

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
①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 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 한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) 또는 그 배우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 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 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보유 주택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(주 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

⑧ 제1항·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,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

⑨ (생 략)

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
포함하며, 그 딸린 토지가 건물
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
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
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
제외한다)을 임차하기 위하여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
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
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
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
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
득금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그
공제하는 금액이 연 200만원을
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
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
⑧ 제1항·제4항·제5항 및 제
<u> 7항</u>

⑨ (현행과 같음)

⑩ 제1항・제4항・제5항 및 제	10 제1항·제4항·제5항·제7
8항에 따른 공제를 "특별소득	<u> ত</u> ্য
공제"라 한다.	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